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1. 『건축물관리법』 제17조(건축물관리점검지침) 및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61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귀 기관(부서)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22. 5. 1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작성 양식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기획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재정담당관, 국토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녹색건축과장, 건축문화
환경과과장, 건축안전과장, 공공택지기획과장, 주택정책과장, 토지정책과장, 주거복지정책과장, 국
토정보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물류정책과장, 자동차정책과장, 항공정책과장, 항공안전정책과장,
공항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철도정책과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건축혁신기획팀장, 도시재생
정책과장, 기획총괄과장, 사업총괄과장,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
원장, 인사혁신처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
육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무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
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관세청장, 병무
청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위사업청장, 문화재청장, 새만금개발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
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
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소방청장, 특허청장, 기상청장, 통계
청장, 농촌진흥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부동산원장, 건축공간연구원
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앙회),
사단법인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사)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한국건축구
조기술사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사)대한건축학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주택협회장, 대한주택
건설협회_중앙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관대우

김진성

시설사무관

권순호

건축정책과장

전결 2022. 04. 26.

이진철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3777

(2022. 04. 26.)

접수 M00004325886

(2022. 4. 28.)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767

팩스번호 044-201-5574

/ argo0813@molit.go.kr

/ 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